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2가단274959 손해배상(기)

원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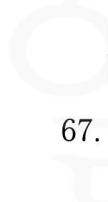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피고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표이사 권오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병주

2.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구본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김효성

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장윤석

4.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황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숙현, 김정현, 김영석

5.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27

대표이사 권영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김범진, 한정규

변론 종결 2017. 9. 28.

판결 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리콤')는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전자, 피고 케이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티')는 공동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삼

성전자,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공동하여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별지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 피고 케이티는 공동하여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전자,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별지6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별지7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케이티는 별지8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별지9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텔리콤, 피고 케이티, 피고 엘지유플러스(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동통신 3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고, 피고 삼성전자, 피고 엘지전자, 소외 주식회사 팬택(이하 통칭할 때에는 '제조 3사'라고 한다)<sup>1)</sup>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이동통신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보완재 관계에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은 대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조 3사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팬택에 대하여도 공동피고로 삼았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60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의결 제2012-104호, 105호, 106호 및 2012. 7. 13. 의결 제2012-122호, 123호로 "이동통신회사 내지 단말기 제조회사인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시된 단말기(삼성전자 제품 단말기 116개 모델, 엘지전자 제품 단말기 87개 모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단말기제조회사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및 출고가(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가격)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그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sup>2)</sup>,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 목<sup>3)</sup>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시정명

---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피고별로 각각 명령을 내렸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주된 내용은 이와 동일하다).

다. 피고들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22999호, 2012누24346호, 2012누24513호, 2012누24735호, 2012누33869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된 쟁점(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법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위계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여 각 해당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상호불상의 이동통신사대리점을 통하여 제1의 나.항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계쟁률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즉, 원고들 중 별지1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에스케이텔리콤과 사이에 피고 삼성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2 목록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와 사이에 피고 삼성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3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피고 엘지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4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에스케이텔리콤과 사이에 피고 엘지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5 목록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와 사이에 피고 엘지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6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사

이에 피고 엘지전자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7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에스케이텔리콤과 사  
이에 주식회사 팬택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8 목록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와 사이에 주  
식회사 팬택 제조의 단말기로, 별지9 목록 원고들은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주식  
회사 팬택 제조의 단말기로 각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및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 앞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갑3호증의 1 내지 6) 및 서울고등법원의 관  
련 판결들 요지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휴대폰 단말기 모델별로 공급가 또는 출고  
가를 부풀려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인 원고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  
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피고들의 해당 모델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를 하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6조<sup>4)</sup>는 사업자가 위 법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단말기별로 (원래 받아야 할 정  
상가격보다) 부풀려 조성한 보조금(예컨대 100)에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조금  
(예컨대 80)과의 차액(예컨대 20)'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 입증의 곤란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

4)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거래관계의 신뢰 및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단말기 1개의 거래당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내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자인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의 발생, 피고들의 법위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와 별도로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에 의하여 손해가 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단말기별로 원래 받아야 할 가격보다 부풀려 조성한 보조금에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조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곧 원고들이 각 휴대폰 매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입한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단말기 대금보다 좀더 낮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해당 단말기 기종을 이동통신 3사로부터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각자 구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 등 거래조건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들 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주장 및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해당 단말기별로 원래의 출고가격이 얼마인지, 도대체 원고들이 자신들의 휴대폰 단말기를 각각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그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못하고 있는 점, ②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토대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원래 지급해야 할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예컨대 갑3 호증의4, 49면), ④ 원고들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조금은 피고들이 협의하여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보조금 상당액을 부풀려서 가격을 책정한 뒤 그 부풀린 금액만큼을 다시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 준 것이어서 소비자들(원고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원고들 스스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2017. 9. 28.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위자료의 명목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들을 좀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 재산상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기 어려운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의 고유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6조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신뢰관계 등 인격적 법익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여야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거나, 휴대폰 단말기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권 내지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무릇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입증 곤란을 회피하고자 별도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행위가 이른바 백화점 사기세일(sale) 사안, 즉 백화점에서 상품의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후 할인판매를 가장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마치 해당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제품임에도 할인을 통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를 한 백화점 사기세일 판매 사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백화점 사기세일 사안은, 백화점이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신상품의 경우 출하할 때부터 실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역산하여 도출된 가격을 마치 종전판매가격 또는 정상판매가격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종전판매가격' 또는 '정상판매가격'이란 것이 오로지 소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가상의 가격으로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해당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안인 반면, 이 사건 행위에서 거론되는 단말기들은 공급가 또는 출고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상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단순 기기변경이나 선물용으로 보조금 혜택 없이 단말기만을 출고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결합상품의 형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공급가 및 출고가가 존재하지만 보조금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휴대폰

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격이나 출고가격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가격이라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서로 간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4) 한편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 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점,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위계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족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더구나 손해의 발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참조), 위 법조항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평가받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인바, 공정거래법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인격권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 소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업자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

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비자들인 원고들이 위 법조항 위반 자체를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곧바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강동원

